

## 7. 山林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農林部令 第1,248號 1996. 12. 31

### 주요 골자

- 가. 대체조림비 면제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제19조의 3 제11호).
- 나. 준보전임지를 70퍼센트 이상 활용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전용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의 범위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함(제19조의 11).
- 다. 국도 등으로부터 가시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종전에는 형질변경허가의 제한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에서 제외 하되, 그 시행일은 산림의 이용구분 개편에 따른 보전임지의 지정·고시일로 함(현행 제90조 제1항 제3호 삭제 및 부칙 제1항).
- 라. 신고에 의한 산림형질변경대상에 산림소유자가 준보전임지안에서 개간없이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와 2천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제9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 개정 이유

『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실천계획』의 추진과 2천년대 쌀자급기반유지를 위한 우량농지보전 및 산지이용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체조림비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지활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3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단지를 제외한다)조성사업

제19조의 11 내지 제19조의 14를 각각 제19조 12 내지 제19조의 15로 하고, 제19조의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11(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전용부담금의 면제대상 사업) 영 제24조의 5 제1항 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또는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 단지조성사업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건설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90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및 제3호”를 삭제한다.
- 제91조 제1항 본문 단서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동항 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

제91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소유자가 1만제곱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임목의 벌채 및 임야의 개간없이 산채·약초 또는 특용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산림소유자가 준보전임지안에서 개간없이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나 농업인·임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자기소유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암석지가 아닌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야를 개간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11. 준보전임지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0호의 11 서식 중 “제19조의 11”을 “제19조의 12”로 하고, 별지 제20호의 14 서식 중 “제19조의 12 제2항”을 “제19

조의 13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816호 산림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지정·고시를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체조림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3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조림비 감면비율에 의하여 대체조림비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대체조림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부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